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55

발의연월일: 2020. 8. 13.

발 의 자: 강준현·고영인·김민석

이용우・박 정・양정숙

김민철 • 이은주 • 이탄희

신정훈 • 아수진비 • 용혜인

이수진 • 이해식 • 김철민

김회재 · 정성호 · 김경만

홍성국 · 강민정 · 황운하

조정훈 · 장혜영 · 이장섭

유미향 · 김남국 · 박상혁

의원(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출퇴근 시간의 조정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 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0항·제11항 신설 및 제116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제10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 중 "제74조제7항"을 "제74조제7항·제10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⑨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⑨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
	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
	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
	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① 제10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16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	2
2조, 제48조, 제66조, <u>제74조</u>	<u>제74조</u>
<u>제7항</u> , 제91조, 제93조, 제98	<u>제7항ㆍ제10항</u>

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